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4일, 이상식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2. 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상식 의원)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퇴직한 자들이 모여 친목 도모, 복지 증진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법률 명칭에 포함된 “경우(警友)”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여, 그 의미와 법률의 적용대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언어적 개선을 이루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유사 법률과의 용어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퇴직경찰 출신 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나아정)

개정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개정하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약칭인 경우회를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약칭인 재향경찰회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1973. 12. 31. 제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출간한 「경우회 50년사」에서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건국·구국·호국경찰 전선에서 평생을 몸 바쳐 조국에 헌신하고 그 직에서 물러난 동지들이 모여 만든 결사체라고 소개함. 이를 고려하면, 경우(警友)라는 명칭은 퇴직 경찰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

최근에는 한문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서 경우회(警友會)가 퇴직 경찰관의 법정단체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재향군인회와 유사하게 퇴직 경찰관의 단체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2025년 12월 26일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명칭 변경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의결함.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내부적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결정한 것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이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정관이 개정되어야 함.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鄉警友會)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大韓民國在鄉警察會)로 변경하고, 약칭을 경우회(警友會)에서 재향경찰회(在鄉警察會)로 변경함으로써, 이 단체가 퇴직경찰관의 단체임을 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1961. 5. 10. 제정)은 전역군인들의 단체 이름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정하고 있음.

개정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이 법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보도록 하고 있음.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통해 법인에 대한 근거 법률의 내용 변경 등으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칠 때까지 법률관계의 효력 등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퇴직경찰관의 법정 단체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책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